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역 장기거주자 공무원 채용 가산점 신설〉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43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광희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27.
3. 회부연월일 : 2026.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Ⅱ. 검토의견

개정안은 근무예정 지역(수도권 제외)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가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해당 응시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도권을 근무예정 지역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¹⁾ 장애인·저소득층·지방인재 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우대제도를 함께 두고 있는데,²⁾

실적주의의 예외로서 우대정책은 1) 개별 법률에 따라 직접 규정된 취업 지원대상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와³⁾ 2) 전체 공무원 선발인원 중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지역 또는 지방인재 등 정책적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초과 합격시키거나 별도로 채용하는 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개별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내용》

대상	가점 비율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1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10%,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가족	10%,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가족	10%,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1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10%,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생존 장병	5%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제2항
의사상자 및 그 유족·가족	5%, 3%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

※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을 부여함(「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2항)
자료: 인사혁신처

-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2) 우대제도와는 별개로 지방의 원활한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지역 구분모집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은 임용 후 5년간 해당 지역 또는 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전보가 제한되고 있음.
- 3)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공무원 임용상 적극적 정책》

구분	대상 (적용시험)	목적	내용	근거법령
채용 목표제	양성평등 (공채 5·7·9급)	공직 내 성비의 균형유지 및 남녀평등 제고	특정 성(性)이 채용목표비율 30% 미달 시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
	지방인재 (공채 5·7급)	국토 균형발전 및 우수한 지 방인재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 ☞ 서울 소재 학교는 제외	채용목표비율(5급 20%, 7급 30%) 미달 시 일정 합격선 내에서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일정비율(5급 10%, 7급 5%) 추가합격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2
구분 모집제	저소득층 (공채 9급)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강화	9급 공채 인원의 2% 이상을 저소 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4
	장애인 (공채 7·9급)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	선발예정인원의 7.6%(의무고용률 3.8%의 두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선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경채	중증장애인	정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고용 촉진	중증장애인 대상 경력경쟁채용시 험 실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6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0조의3
	전국 지역인재 (7·9급 추천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고졸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 ☞ 광역자치단체별 선발	[7급] 대학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 수습근무(1년) 후 임용 [9급] 고등학교·전문대학(기술직에 한함)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 6개 월 수습근무 후 임용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자료: 인사혁신처

한편, 지방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의 인적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데, 현재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의 69.6%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인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에 연고를 가진 청년인재의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내 취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개정안은 지역 장기거주자가 해당 지역 공개 경쟁 채용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

출을 완화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 인적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은 가산점 적용 대상 지역에서 수도권인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도 가평군·연천군은 도서지역, 도농복합지역, 접경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다른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에 직면하고 있는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인재의 정착이라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지역을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가산점 대상이 되는 장기거주자의 구체적인 거주기간에 대해 하위 법령(대통령령)에 모두 위임하고 있고, 가산점의 최대 한도와 구체적인 부여방식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있는데,

다른 응시자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인 만큼 그 적용요건인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나 기준을 정하여 수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산점의 최대한도 및 부여방식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2014. 4. 24. 2010헌마747)는 지역가산점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의 공직 진입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응시자 중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담임권 제한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가산점의 배점비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지역 장기거주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자체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개정안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가산점 적용 대상 지역의 적정성, 장기거주 요건의 설정 기준, 가산점의 최대한도 및 부여방식과 관련한 입법형식의 타당성 등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인재 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안과 같은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2